

## 견책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7누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공무원신분
원고(항소인)	○○○	피고(피항소인)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판결선고일	2018.01.17.	비고	
사건개요	<p>원고는 □□□□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, 2013~2014년 경 ■■■■ 학교의 계약직 사서 ●●●와 여교사 ◎◎◎를 성희롱 및 강제 수행한 사실이 있어 2015.07.22.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았고,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5.08.19.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, 동 결정에 불복하여 2015.12.07.자로 소를 제기함.</p>		
주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</li> <li>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li> </ol>		
청구취지 (항소취지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청구취지 피고가 2017.07.22.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.</li> <li>2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</li> </ol>		
판결이유	<p>원고는 정보부장 교사로서 계약직 사서인 ●●●에게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성희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, 원고가 여교사 ◎◎◎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사건 처분 절차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,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등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.</p>		
결론	<p>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/p>		